

1. 개정이유

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시 무료직업 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,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가 고용24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구비서류 감축이 가능하므로 관련 시행규칙 규정 정비

2. 주요내용

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,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제출 요구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,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관련 문구 삭제

* 행정안전부 「2025년 민원 일제정비 추진계획」, 동 규정이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 간소화 대상 규정에 해당하여 정비 필요함을 지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(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)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”를 “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

※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명 칭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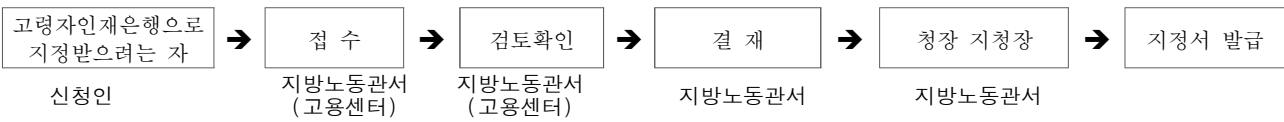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.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※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명 칭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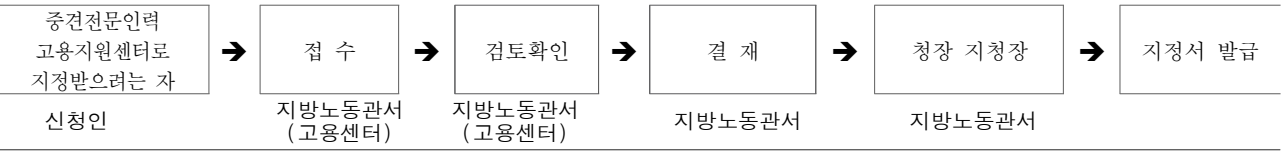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,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.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2.·3. (생략) ② (생략) 제6조(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)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「<u>직업안정법 시행규칙</u>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(「<u>직업안정법</u>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) 2.·3. (생략) ②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(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삭 제> 1.·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